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후단 신설).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 목적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각종 기본재산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4 신설).

II. 검토의견

1.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의 내용 규정(안 제43조의3제2항)

개정안 제43조의3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처분 방법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강의 내용은 정해지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됨.

잔여재산 처분 특례의 핵심 사항인 처분 방법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해진다는 점, 개정안 제54조에 따르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따르지 않고 잔여재산을 처분하거나, 잔여재산처분계획서가 첨부된 해산인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에 대한 사항, 보조금 반환 계획 및 보조금 반환 의무자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사회복지사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교육

	<u>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u> <u>2.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u> <u>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반환 계획 및 보조금 반환 의무자</u> <u>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	---	---

2.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목적사업 변경 인가권자 (안 제43조의3제1항 및 제43조의4제1항)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제43조의3제1항)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제43조의4제1항)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소재지와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서로 다를 수 있어 둘 중 어느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당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시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므로¹⁾ 법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 해산의 인가도 같은 관할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것으로 명확히 수정함.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의4(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	제43조의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u>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u>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u>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u>
--	--	--

3. 벌칙(안 제54조)

개정안 제54조제4항제7호의2에서는 ‘거짓 또는 허위로 해산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과 ‘허위’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라는 점, 이 벌칙의 입법취지가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주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그 특례를 받기 위해 제출한 문서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므로, 잔여재산 처분 특례의 주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해산인가신청서와 함께 나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²⁾로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54조(벌칙)④ 다음 각	제54조(벌칙) ④ -----	제54조(벌칙) ④ -----

2)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 판-, 2023, p.16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 -----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신청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한 자</u>	----- -----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u>
--	--	--

Ⅲ. 관계기관의 의견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³⁾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⁴⁾에 따라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 3)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사항
 2.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사항(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바, 개정안 제43조의4제4항에서 목적사업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자율성 제한 및 행정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문위원 이 은 정)